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은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15조 【이용계약】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기관과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1.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기관과 이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③ 기관은 계약 체결 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 ④ 관리책임자(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2.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3. 계약체결한 이용자는 “별지3.수급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수급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즉시 장기요양급여계획 통보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기간】

1. 이용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하며 이용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3.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때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9조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책임 이행】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방법
장기요양이용자의 거주지(가정), 우리함께재기복지기관 또는 기타장소에서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③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④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이용자의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③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④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⑤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⑥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21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 ③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④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 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 ⑥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용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별지4.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 ② 이용자가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 유예기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9%,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사위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관리지원 등을 포함한다.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 (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 (가정내 목욕제공)
50,100원	88,990원	80,230원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한다.